

北韓의 基本權 規定에 關한 批判的 考察

金 光 澤

I

近代憲法の 歷史는 自由에의 歷史였다. 憲法이 最初로 成文形式을 띠게 된 美國憲法이후 自由權을 비롯한 國民의 基本權保障은 近代立憲主義憲法の 特色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憲法自体가 基本權保障規範임을 強調하고 國家權力の 制限規範임을 宣言하기 위하여 基本權에 대한 規定이 憲法の 序頭に 두어지기도 한다.

우리憲法도 基本權保障을 그 特色으로 하고 있는데 基本權의 大原則을 憲法前文에서 宣言하고 있으며 또 第二章에서 이를 個別的으로 保障하고 있는데 특히 第8條와 第32條는 基本權保障의 一般原則을 定하고 있다는데 그 特色이 있다.¹⁾ 이러한 規定들은 個人의人 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의 認定을 前提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憲法은 領土條項인 第3條의 規定에 의해 韓半島全体에 効力を 가지고 있으므로 北韓地域에 대해서도 當然히 効力を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으로 北韓地域에는 共產傀儡政權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憲法은 平和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地域에 대한 實際의 適用이 다만 留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民族史的인 正統性에 비추어 北韓의 傀儡政權을 결코 國家로 認定할 수가 없는데도 그들은 소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社會主義憲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本論文은 그들이 말하는 이 「憲法」에 規定된 基本權, 그 중에서도 自由權規定에 대한 批判的 考察을 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우리가 國家로 認定할 수 없는 傀儡政權의 最高法에 대한 論議自体가 觀點에 따라서는 전혀 不必要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는 自由權規定을 통한 批判的 考察로 北韓政權이 個人의 價値와 尊嚴性을 얼마나 無視하고 있으며 住民을 政治的目的의 道具로 利用하고 있는 것을 밝힘으로써 自由民主主義理念아래 生活하고 있는 우리들이 共產主義의 잔혹성을 理解하고 그들에 대한 警覺心을 가질 수 있다면 實益이 될 것이라는 判斷아래 本研究를 하게 된 것이다.

1) 金哲洙, 憲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7. pp.45-46.

2 는 문 집

本研究는 性格上 소위 「北韓憲法」에 規定된 自由權만에 局限시켜야 하는 것이 當然한 일이지 만 北韓의 共產政權의 法秩序가 二元的構造라는 點을 감안, 경우에 따라서는 法適用의 實狀가 지도 考察했음을 밝혀둔다.

I

人間의 自由權은 元來 自然法思想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啓蒙의 自然法論者들은 自由權은 國家에 의해 創設된 權利가 아니고 國家以前에 獨自的으로 存在하는 超法的權利로서 平等權과 함께 人間이 그의 出生과 더불어 生來的으로 지니는 人間만이 特權이기 때문에 天賦的權利라고 했었다.

J·Locke, J·Rousseau 등은 이러한 自由를 人爲的方法에 의해 制限하는 것은 自然의 攝理에 거역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近代憲法上的 自由權은 이러한 自然法論者들의 영향에 의해 人間이 自我의 發見으로 인한 個人主義의 土台위에 成立한 것이다. 近世以前에 있어서는 政治價値의 根源이 「神」에 두어졌으나 近世에 들어 이것이 人間에 옮겨감으로써 近世의 個人主義는 人間主義에 歸結되게 됐다.

政治價値의 根源을 人間에 둔다는 것은 政治社會를 構成하는 人間의 存在를 認定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人間은 生來的으로 自由를 追求한다. 自由를 追求하는데 人間의 심오한 本性이 內在해 있다.

近世의 歷史는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各領域에 있어서 封建의 桎梏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키기 위한 自由獲得의 歷史라고 할 수 있겠다.

自由는 人間의 尊嚴性을 바탕으로 人格價値의 事物價値에 대한 優越과 人間을 客體로 卑下시켜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前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權은 立憲主義의 成立이후 憲法에서 이를 保障함으로써 비로소 成立한 것이다. 따라서 自由權의 概念에 대한 解釋도 달라져 오늘날에 있어서는 實定法인 憲法이 保障한 權利를 近世自然法論者들의 主張과 같이 國家를 超越하고 國家에 앞서는 權利라고하는 것은 理論上 無理이며, 이를 實定法上的 權利라고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自由權에 대한 規定은 美國憲法으로부터 出發한다.

즉 美國의 버어지니아州의 權利章典 (Bill of Rights)과 美國獨立宣言書는 바로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規定의 原型으로 看做되고 있다. 여기에는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 反抗權 등 自由權 등 自由權의 個別的 內容이 規定되고 있다.

1787년에 制定된 美國憲法에는 이러한 自由權에 대한 明文規定이 없었으나 1789년~1791년까지의 修正을 거쳐 自由權 등 基本權이 明文化되었다.

近代憲法の 基本權規定에 있어 美國憲法에 못지않은 決定的役割을 한 것은 아무래도 佛蘭西

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宣言에는 一般的인 自由權은 勿論 財産權, 安全權, 反抗權등 基本權이 廣範하게 規定되어 있다.

·勿論 基本權發祥의 歷史는 멀리 英國에 있어서의 名種의 權利章典으로까지 소급된다. 英國에 서는 일찌기 信仰의 自由를 위한 宗教의 鬭爭과 政治의 自由를 위한 議會鬭爭에 의하여 國王과 新興市民勢力간의 妥協의 所産으로서 協約된 大憲章(1,215年), 權利請願(1628年), 人身保護法(1679年), 權利章典(1688年) 등과 같은 各種의 章典이 制定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權利는 專制君主와 長期間에 걸쳐 鬭爭해온 英國市民들만의 特權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이러한 基本權概念이 全人類에게 普遍化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普遍的基礎위에 올려 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基礎를 닦은 것이 英國의 植民地로 있었던 美國土에서의 宗教의 自由, J. Locke, J. Rousseau등 啓蒙的 自然法論者들의 天賦人權論이었고 이것을 實際로 應用한 것이 美國의 獨立과 佛蘭西大革命이었다.²⁾

이러한 歷史的 過程을 거쳐 오늘날의 모든 國家는 憲法에 自由權을 비롯한 各種基本權에 대한 規定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憲法에 規定되고 있는 基本權은 나라마다 一定한 것은 아니며 特別히 政治理念 및 體制에 따라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는 것을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의 自由權의 概念은 個人主義 내지는 自然法思想에 立脚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原則을 基礎로 하고 있음을 前提로 해서만이 肯定되는 概念인 것이며, 이러한 基本原則을 否認하는 全體主義, 集團主義의 理念아래서는 도저히 생각치도 못하는 것이다.

·소위 北韓憲法은 제4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公민의 權利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치는 하나를 위하여 集團主義原則에 기초한다.」³⁾고 한것을 비롯해 제4장에서 제49조~제72조까지 23個條項에 걸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있으나 其實은 「公民」에게 賦與된 權利面보다도 義務(盲從)를 強調하는 語彙만을 羅列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全體主義 내지 集團主義, 혹은 社會主義體制下的 理念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當然한 歸結이라고 하겠다.

自由民主主義國家의 憲法이 人間의 尊嚴성과 價値성을 認定하는 原則아래 基本權을 規定하고 있는데 비해 소위 「北韓憲法」에서는 人間이 集團體制의 目的達成을 위한 道具로서의 意義를 지니고 있을 뿐이며 個人은 全體를 위한 存在에 不遇하다는 全體主義의 根性を 그대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또 所謂 「北韓憲法」은 그 名稱부터가 그냥 憲法이 아니라 社會主義憲法임을 強調하고 있는데 이것은 資本主義와 自由主義의 政治思想을 全面的으로 否認한다는 것을 宣言함과 同時에 社會

2) 金哲朱 憲法憲覽, 玄當社, 1954, p.184-185. 金哲朱, 憲法學概論, 法文社, 1975. p.201.

3) 姜求眞, 北韓法の 研究, 資料編, 博英社, 1975, p.279.

4 는 문 집

主義國家임을 밝히고 아울러 자기네들의 政治的 理念을 여기에서 斷言한 것이라고 하겠다.

北韓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은 1972年 12月 27日 改正된 것으로 改正背景과 基本理念이 「公民」을 集團에 歸一시키므로써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더욱 다지고 赤化統一의 野慾을 위한 道具로 使役시키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毒素가 憲法을 支配하고 있는 터라 「公民」의 基本權—그중에서도 特히 人間의 自由權을 保障하는 規定이 있을 리 萬無한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다. 따라서 所謂「北韓憲法」이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는 제4장을 볼 때 自由權 가운데서도 그 根幹이 되는 身體의 自由에 대한 保障規定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제64조2항에 法에 근거하지 않고는 「公民」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北韓住民들의 人間으로서의 尊嚴및 價値를 認定받을 수 없다는 것은 憲法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위 刑法規定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北韓의 刑法 제7조에 『罪라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規定한 것을 注視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條文을 法理的으로 解釋해 볼 때 첫째, 故意犯과 過失犯의 구별이 없고 둘째, 既遂犯과 未遂犯의 구별도 없어 「일체의 가벌적 행위」(소위 危殆犯)를 犯罪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셋째로 犯罪의 構成要件이 法定化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個人의 自由, 특히 身體의 自由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 自体가 無謀한 일이 아닐 수 없다.(私見)

現實적으로 볼 때 北韓에서 소위 「主席」은 立法·行政·司法 등의 全權을 專橫하는 現代版 專制君主로서 君臨하고 있어 「主席」의 命令이 憲法이상의 權威와 拘束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北韓은 二元的 憲法體系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所謂 北韓憲法 제9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中央人民委員會를 직접 지도한다』고 했고 제101조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 首位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또 제103조에서는 中央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즉 ① 국가의 對內外政策을 세운다. ② 政務院과 地方人民委員會 사업을 지도한다. ③ 司法檢察機關 사업을 지도한다. ④ 國防 및 國家政治, 保衛事業을 지도한다. ⑤ 憲法, 最高人民會議, 法令,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會政令, 결정, 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기한다. ⑥ 政務院의 部門別執行機關인 部를 내오거나 없앤다. ⑦ 政務院總理의 제에 의하여 副總理, 各部長, 그밖에 政務院 隨員들을 任命 및 解任한다는 등 모두 13個項目에 이르는 權利와 義務條項을 羅列해 놓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소위 北韓憲法상의 『主席』은 全權을 掌握하고 있는 事實上的 專制君主의 地位에 있는 것이 分明하다. 그중에서도 「首領敎示」로 알려진 「主席命令」(首領이란 北韓의 소

위 舊憲法상의 主席稱呼이었다.)은 北韓社會의 高次的인 最高法으로 「人民」들에게 絕對性을 強要하고 注入시키는 무기로 쓰여지고 있다.

그들의 憲法 제68조에는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민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의 政治權力構造面에서 頂上에 위치하고 있는 「主席」에 대한 信仰의盲從만을 強要하고 있다는 實定法的인 證據라고 할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소위 北韓憲法의 法的 基本秩序가 全体, 또는 集團의 執權者인 1人, 즉 憲法상의 「主席」에 대한 철저한 忠誠과 盲從만을 強要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基本的 人權 내지는 人間으로서의 價値는 아예 考慮의 對象이 될 수 없음은 當然하다 하겠다.

I

이상에서 소위 北韓憲法이 規定하고 있는 自由權에 대해 包括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제 個別的 自由權의 規定에 대해 批判的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1. 身體의 自由

身體의 自由란 生命의 自由, 身體自律의 自由 등을 包含하는 것으로 모든 自由의 根幹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近世國家의 市民들은 餘他的 權利에 앞서 身體의 自由를 爭取하였던 것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國家에서도 身體의 自由를 다른 自由權에 앞서 憲法의 基本權條項의 序頭に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北韓憲法」의 身體의 自由에 대한 規定은 극히 不充分하다.

첫째, 罪刑法定主義規定이 없다.

罪刑法定主義는 近代刑法의 指導原理로서 憲法에 國民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法律에 의하여야 한다는 宣言的 規定이 있어야 하는데도 所謂 北韓憲法에는 이것이 없고 다만 제64조2항에 『法에 근거하지 않고는 公民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만 規定하여 처벌에 대한 權力濫用의 制限要件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法律이 아닌 命令에 의해서도 「公民」을 처벌할 수 있다는 論理가 正當化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所謂「北韓憲法」제67조에서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生活準則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規定을 보더라도 立證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社會主義的 規範이 무엇이며, 社會主義的 生活準則이 어떠한 것인가는 明示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곧 그네들이 말하는 組織(勞動黨)의 指示, 「主席」의 命令에 不遜하다고 解釋함이 옳은 것이다.

또 제72조1항에서는 『祖國保衛는 公民의 最大의 義務이며 榮譽이다』라 되었는데 하던 또한

6 논문집

同제3항에서는『祖國과 人民을 背叛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祖國과 人民을 배반하는 者는 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의 (祖國)은「主席」이며「人民」은「集團」으로서 勞動黨과 各 級人民委員會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에 反抗을 했을 때는 反逆罪로서 極刑에 처하겠음을 위협하는 規定으로 解釋되는것 이다.

둘째, 一事不再理原則에 대한 規定이 없다.

國民이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두번다시 處罰받지 아니하며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法論理上 당연한 것이다.

모든 自由民主國家는 國民의 法的 生活의 安定을 위해 이러한 一事不再理原則과 溯及立法禁止를 憲法에 規定하고 있지만 소위「北韓憲法」에는 이러한 規定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同一犯罪行爲에 대한 二重處罰이나 溯及立法에 의한 處罰도 違憲이 될 수 없다는 名分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解釋할 수 없다.

셋째, 刑事被告人의 權利를 認定해 주는 規定이 없다.

北韓의 소위「裁判所構成法」에서 볼 때 判事가 一定한 基本資格이 있는 게 아니고 黨性이 강한 者중 選舉에 의해서 任命되는데 裁判은 判事와 檢事만 參與하면 進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辯護人은 事實上 裁判當事者가 될 수 없으며 被告人은 辯護人 없이 裁判을 받게 된다.

勿論 北韓에도 辯護人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訴訟事件을 辯護人에게 委託한다 해도 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며, 설령 辯護를 한다 해도 何等의 利得이 없으므로 이를 忌避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所謂北韓에서는 逮捕되어 拘禁되면 無罪判決이 되는 事例는 거의 없어 被告는 곧 罪人이라는 觀念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소위「人民裁判」에 회부되었을 경우 無罪가 된 例는 지난 30餘年間 단 한件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北韓憲法上的 規定들을 볼 때 北韓에서 自由權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身體의 自由가 있느냐 없느냐고 論議한 다는 그 自體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⁴⁾

2. 居住·移轉의 自由

居住·移轉의 自由는 歷史적으로 볼 때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에 決定的인 影響을 준 反封建의 自由權임이 明白하다. 이 自由는 自國內의 어디든지 自己가 원하는 곳에 居住 또는 住所를 定하거나 移轉할 수 있는 自由와 아울러 國際的 交通이 빈번해짐에 따라 國外로 移轉하는 自由와 國外로부터 國內로 歸還하는 自由를 의미한다. 이 自由에는 職業의 自由까지 包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居住地는 곧 人間의 生活根據地가 되는 것이며 一面에서는 職業이 生活의 根據를 提供해 주는 것이므로 職業의 自由와 居住의 自由와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姜求真, 前揭書, 北韓刑法 第16章 參照

다. 이러한 자유는 資本主義와 個人主義를 土台로 하고있는 自由民主主義國家의 憲法에서만 볼 수 있는 規定인 것이며 社會主義내지 全體主義 政治理念의 國家의 憲法에서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北韓憲法은 이에 대해 제64조1항에서 『公民은 妊娠 및 居住의 不可侵과 信書의 秘密은 保障받는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제65조에서는 『結婚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細胞인 家庭을 公고히 하는데 갖은 배려를 돌린다』고 하여 직접적인 表現이 아니라 模糊한 規定을 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은 한낱 對外的인 體面維持를 위한 僞裝術策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北韓에서는 個人生活의 根據가 되는 職業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지 않고 生活을 集團 혹은 黨에서 일방적으로 指定한 職業에 따라 指定된 場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居住의 自由가 있을 수 없다.

또한 私有財產制度가 완전히 抹殺된 社會이기 때문에 私企業이나 個人所有의 家屋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公民이 使用하고 있는 建物이 國家나 協同團體의 所有인 것이다.

所謂「北韓憲法」 제18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이다』고 하고 있고 제19조는 『國家所有는 全體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對象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資源·重要工場·企業所·港灣運行·교통운수 및 채신기관은 國家만이 所有한다. 國家所有는 共和國의 經濟發展에서 主導的 役割을 한다』고 하여 一切의 經濟價値性이 있는 物資는 全部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라고 해서 「人民」의 財產을 公共然하게 수탈하고 있음을 明確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社會에서 『家屋의 賣買, 賃貸 등의 行爲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居住·移轉의 自由가 保障될 리 없는 것은 너무나 自명한 것이다.』

한편 住居 自由에 대해서는 居住란 사람이 居住하기 위해 占居하고 있는 建造物로서 住宅·學校·會社·店舖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居住의 概念이 動的인데 대하여 이 住居의 概念은 靜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住居의 自由는 古代 Rome의 住居의 平穩과 住居의 不可侵, 住居의 神聖思想이래 人格의 尊嚴과 結付되어 個人의 自由權으로서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思潮가 美國修正憲法 第4條에서 表現되기 시작되고 그후 近代憲法은 例外없이 이를 採擇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北韓憲法도 제65조에서 「住宅의 不可侵云云」하여 法理的 解釋에 앞서 文理的인 해석만으로 볼 때는 住居의 自由를 絶對적으로 保障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實은 住居를 侵害당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防止하며, 또 侵害당하였을 때 이미 侵害된 權利의 回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規定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역시 對外的인 體面을 維持하기 위한 假

5) 金哲洙, 憲法學論, 法文社, 1975, pp. 229-333. 韓泰淵, 新憲法, 法文社, 1961, pp. 206-207.

飾的이며 宣傳的 規定에 不遇한 것이라고 하겠다.⁶⁾

3. 職業選擇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란 繼續的으로 從事할 職業分野의 決定은 各者의 任意이며 어떠한 強制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職業을 스스로 選定할 수 있는 自由와 選定한 職業에 從事하는 自由를 포함한다.

職業의 選擇을 決心하는 決定의 自由는 人間의 內心的 自由의 性質을 띠는 것이므로 法律의 留保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職業從事의 自由는 就業의 自由가 包含되며 이 自由는 法律에 의한 規制對象이 된다.⁷⁾

소위「北韓憲法」에서의 職業選擇의 自由는 居住의 自由를 論及할 때 이미 간단히 考察한 바와 같이 職業選擇은 곧 個人的 資本蓄積의 原因이 되는 것이므로 資本主義經濟를 根源的으로 否認하고 있는 北韓社會에서는 이의 保障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職業이 黨에 의한 一方的 配當과 指定된 作業場으로부터 離脫했을 때는 「國家와 人民」에 대한 背反行爲라고 斷定하여 處罰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즉 소위 北韓刑法 第196조는 『協同團體를 假裝하여 個人企業所를 組織하거나 그에 協助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全部 또는 一部の 財産沒收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第197조는 『의무적 노동, 사회적 및 국가적 과업 또는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생산노동을 악의적으로 기피한 자는 3개월이하의 教化勞動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人民들에게 割當하는 職業이 곧 人民들에게 強要하는 強制勞動임을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다.

4. 通信秘密의 自由

通信의 秘密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個人的 privacy의 秘密保障을 말하는 것으로서 信書는 勿論 電信·電話의 秘密까지 포함되는 概念이다.

通信의 秘密을 保障한다는 것은 公權力에 의해서 通信의 內容이 他人에게 알려짐으로써 當事者가 不利益을 받게 되는 것을 禁止하기 위한 것, 즉 個人的 私生活을 保護하려는 취지에서 基本權으로서 認定되는 權利인 것이며 또한 良心의 自由, 言論·出版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土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通信의 秘密은 治安의 維持등 特定目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自由民主國家가 留保條項없이 그 自由를 憲法에서 保障하고 있다.⁸⁾

그러나 所謂「北韓憲法」은 第65조에서 信書의 不可侵만을 認定하고 있을 뿐 刑法上에는 秘密侵

6) 金哲洙, 憲法學概論, 法文社, 1975, p. 229.

7) 그 例로서 兵役法, 國家公務員法, 地方公務員法, 醫師法, 第師法, 大衆湯營業法등을 들 수 있다.

8) 大韓民國憲法은 第15條에 通信의 秘密保障을 規定하고 있다.

害에 관한 制裁條項조차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通信의 自由 따위는 考虜의 價値가 없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고 解釋함이 妥當할 것이다

그 좋은 例로서는 1959년부터 그들이 強制的으로 北送해 간 在日同胞 10數萬名 가운데서 단 한사람도 日本에 殘留된 家族들에게 安否의 書信을 낸 사실이 없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宗教의 自由

近代國家에 있어서 宗教의 自由는 英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發生過程에서 宗教的 道德的 原理를 의미하는 近代民主主義의 精神的 基礎로서 看做되고 있다.

宗教의 自由에는 ① 信仰의 自由 ② 宗教的 結社의 自由 ③ 宗教的 行爲의 自由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가지의 內容中에서 첫째의 信仰의 自由는 國法에 의해서도 制限할 수 없는 絕對的 自由이다. 즉 信仰이란 어떠한 對象에 대하여 主觀的 確信을 意味하기 때문에 이것은 人間의 外部的 行動으로 表現되는 것이 아니고 內心的 自由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自由는 國家에 의해서도 制限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것을 絕對的 自由라 하여 대부분의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는 이것을 法律의 留保에서 除外하는 規定을 두고 있는 것이다.⁹⁾

둘째, 宗教的 結社의 自由는 信仰의 自由인 면에서도 어떠한 形式을 통하여 外部에 行動으로 表現될 때에는 國家에 의해서 制約의 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信仰의 自由에는 特定한 宗教의 信仰 및 不信仰의 自由와 特定宗教를 信仰함으로써 差別待遇를 받지 않은 自由, 宣傳의 自由, 또는 國家機關의 審問에 대한 默秘權의 自由 및 宗教的 教育의 自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宗教的 結社의 自由는 이러한 信仰의 自由와 必然的으로 結付되는 것이므로 一般的인 集會와 結社의 自由와는 區別된다.

宗教의 自由에 대한 소위「北韓憲法」상의 規定을 보면 제54조에서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社會主義를 내세우고 있는 政權인 만큼 宗教의 自由를 保障한다는 것은 이러한 理念에 不合致되는 것이므로 唯物論的인 社會構造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그 憲法의 規定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信仰의 自由보다도 反宗教宣傳에 더 注力하고 있음은 看破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즉 反宗教的 自由는 宗教彈壓의 合理化를 위한 根據를 提示해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宗教彈壓도 合憲行爲라고 辯明함에 아무런 꺼리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根據가 여기에서 導出되는 것이다. 오히려「北韓社會」에서는 住民들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佛敎나 基督敎니하는 宗教보다도 執權者인 一人獨裁者의 「敎示」(소위 主席命令)가 宗教의 敎理보다도 더 偉大한 가르침이고 唯

9) 大韓民國憲法 第16條 參照.

一思想으로 住民들을 저들의 道具로 教化시키려는데 온 政策이 集中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는 宗教의 自由란 있을 수가 없고 『宗教는 革命課業遂行 課程에서는 麻藥과 같은 存在이다』라는 金日成의 發言이 오늘날 그 社會에서의 宗教에 대한 絶對的 觀念으로 確立되어 버린 것이다.¹⁰⁾

이러한 宗教의 抹殺은 같은 共產國이면서도 비교적 宗教의 自由를 폭넓게 認定하고 있는 東歐諸國과도 너무나 對照的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6. 良心의 自由

良心의 自由는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思想의 自由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換言하면 自己心中에서 생각하는 바는 自由이며 이것을 強制로 告白당하지 않는 自由를 말한다.

이러한 良心의 自由는 1850年の 프로이센憲法(제7조), 1867年の 오스트리아 憲法(제14조), 스위스憲法(제41조), 바이마르憲法(제135조) 등에서 規定되기 시작했다.

良心의 自由는 通說에 의하면 內心の 自由의 一面으로서 內心の 自由는 行動의 自由에 先行하고 모든 精神的 自由의 基盤이 되는 包括的 自由를 말하는데 內心の 自由中 특히 倫理的 性格의 面만을 良心의 自由로 보는 것이다.¹¹⁾

이 學說은 良心의 自由를 意思 등과 區分하여 人間의 思考作用中 그 道德的 倫理的 判斷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良心의 自由가 비록 無制限의 自由일지라도 反國家, 反社會的 內心일 때에는 그것이 옳은 國家觀이나 社會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憲法上 保護받고 있는 良心의 自由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人間의 이러한 思考作用은 思想의 自由로 直結되는 것이며 一体를 形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헌법에서는 思想의 自由에 대한 保障規定을 따로 規定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北韓에서는 그 憲法自体가 個人的 尊嚴性과 價値性이 集團앞에서 完全히 埋沒되고 있기 때문에 良心의 自由나 思想의 自由에 대한 規定이 없고 그러한 語句조차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제68조에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해야 한다. 公民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規定하여 個人的 良心의 自由, 또는 思想的 自由를 保障하지 않는다는 牽制的 規定을 設定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北韓에서는 內心的인 心理作用마저 集團主義라는 名目아래 否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金哲洙, 憲法總覽, 玄岩社, 1964. pp. 231-234.

11) 通說에 同調하는 日本學者로는 佐佐木, 清宮등을, 國內學者로는 韓泰淵, 朴一慶, 文鴻柱教授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社會에서의 倫理觀의 긍정적 목적이 어디까지나 獨裁者 1人에 대한 絕對的 忠誠(盲從)만이 全部이며 나아가 金日成敎示 10大原則만이 強要될 뿐이다. 이러한 現象은 곧 北韓 住民들로 하여금 集團을 위한 思考以外에는 一切의 思考作用마저 許用이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人間으로서의 精神生活面까지도 自由를 許用치 않는 것이 된다.

8.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言論·出版의 自由는 內心の 思想을 外部에 表現하는 것으로서 이 自由는 近代國家의 成立에 있어서 強力히 要請된 自由權의 하나이다.

國民은 主權者이며 國家意思의 最高決定機關이라는 것을 指導原理로 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는 國民의 意思가 自由롭게 發表되어야 하며 國民은 政府의 行動을 監視하고 批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輿論形成 또는 批判의 手段인 言論·出版의 自由는 保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言論·出版의 自由는 政治에 대한 批判의 自由이며, 또 이것은 自由롭게 批判을 받을 수 있는 自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權利는 集會 및 結社의 自由와 함께 民主主義의 礎石인 것이며 이것이 保障되지 않고서는 民主主義는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世界人權宣言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意見과 表現의 自由를 가진다. 이 權利에는 獨自의인 意見을 가지는 自由와 國境의 制約없이 情報과 意見을 接受하는 自由가 內包되어 있다」고 規定하여 汎世의인 指標를 提示하였다.

이러한 思潮에 따라 自由民主國家의 憲法들에서는 言論·出版의 自由保障을 規定해 國民의 政府에 대한 批判을 認定하고 있다.

所謂「北韓憲法」에서도 제53조에 「公民은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民主的政黨, 社會團體의 새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外見上으로는 言論·出版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條文의 後段에서 「새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한 것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條文의 前段에서 保障한 言論·出版의 自由를 制約하고 彈壓할 수 있는 合理的 根據를 마련해 두어야 할 政治的 必要性에서 이러한 怪異한 條文이 된 것이라고밖에 解釋할 수 없다.

그것은 소위 「北韓憲法」의 基本 原理가 集團主義에 있기 때문에 「民主的政黨」과 「社會團體」¹²⁾의 새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는 것은 곧 政黨, 社會團體, 其他組織體의 課業이라는 名目 아래서는 個人的인 言論이나 出版의 自由쯤은 當然히 制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合理化하기 위한 二律背反的인 內容의 條文인 것이다. 그 證據로서 제72조3항의 「祖國과 人民을 背反하는 것은 가장 큰 罪惡이다. 祖國과 人民을 背反하는 者는 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규정

12) 중요한 社會團體로는 各級人民委員會, 青年團體, 婦女團體, 協同組合 등이 있다.

만 보더라도 金日成의 政策에 대한 批判的 發言은 모두가 祖國과 人民에 대한 背反行爲로 斷定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思想의 自由 및 言論의 自由가 許用될 리 없으며 따라서 알고 싶은 自由마저도 不許한다는 結果가 나오게 된다.

이런 狀況이 北韓社會를 外部世界로부터 完全히 高립되고 密閉된 社會로 만들어 버린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現實적으로 北韓社會의 메스컴, 즉 新聞이나 放送 報道內容이 언제나 黨이나 政權의 업적을 誇張宣傳함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이 말하는 「人民」의 진정한 여론이 報道에 반영되는 例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歸順勇士 김용규씨의 證言에서 「韓國의 新聞을 보고 新聞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다.¹³⁾

따라서 이러한 北韓의 現實에서는 言論·出版의 自由를 云云한다는 自体가 憲法違反으로 犯罪行爲를 自招하는 結果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北韓刑法은 제7조에 『罪라 함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및 그에 수립된 法律秩序를 侵害할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일체의 可罰的 行爲이다』고 犯罪를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規定으로는 黨 및 政權에 대한 어떠한 批判도 犯罪行爲로 다스릴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되게 마련이다.

다음에는 集會 및 結社의 自由에 대한 考察을 해 보자.

所謂 北韓憲法에서도 제53조에서 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規定하고 있으나 其實은 住民들의 政治的 自由를 完全히 封鎖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에는 朝鮮民主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主義로 우리 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生活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두어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¹⁴⁾만을 憲法秩序의 基本理念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5조에서는 「朝鮮民主주의인민공화국은 北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祖國을 平和적으로 統一하며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政治的 自由의 完全封鎖를 強調하고 있는 그들의 政治原理를 여기에서도 露出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에서 複數政黨制度라는 것은 아예 생각치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現政權에 대한 批判的 立場에서는 野黨의 存立이란 있을 수 없으며 單一政黨에 의한 獨裁政權의 肥大可能性이 無限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選舉에서는 單一政黨인 勞動黨의 1人候補者에 대한 贊否만을 묻고 있으면서도 對外的으로는 「公明한 人民의 主權行使」의 結果 99% 이상의 贊成이니 또는 支持니 하고 날조된 政治宣傳에 汲汲하고 있는 것이 北韓의 現實인 것이다.

13) 朝鮮日報, 1976年 10月 15日, 3面記事에서 引用.

14) 이는 金日成의 소위 「唯一思想」과 相通하는 것이다.

이같은 社會狀況으로 볼 때 執權者에 대한 反對意思로서의 集會 및 結社의 自由가 保障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일이다. 그러므로 北韓住民들은 執權(勞動黨)의 指示와 訓令에 대해서는 無條件服從만이 強要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主席」의 敎示라면 住民들에게는 憲法에 優越하는 絶對的인 至上命令이기 때문에 이 命令에 不服하는 者는 소위 「人民」을 背反하는 行爲라고 認定되어 嚴罰에 처한다는 刑法이 發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非單 그 命令에 不服한 個人間만의 犯罪가 아니고 그러한 者를 庇護해 준 部落民들까지 同調者라고 해서 共犯形式으로 處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主席」에 대한 忠誠心의 連帶意識을 堅固히 한다는 것이라고 執權者들이 믿고 있는 것이다.

9. 學問의 自由

學問의 自由는 西歐, 特히 獨逸에 있어서의 「大學의 自由」로부터 發達해 온 것이며 1849년 制定된 프로이센憲法 제20조가 學問 및 學說의 自由를 國民의 基本權으로 規定했던 것을 호시로 하여 그 이후의 各國憲法에서는 대부분이 이를 認定하는 條文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學問의 自由를 大學에 있어서의 學術活動自由의 意味만으로 限定시킬 必要는 없으며 一切의 學問的 活動의 自由를 包含한다고 解釋함이 妥當할 것이다.

學問의 自由는 누구에게나 認定되는 天賦의 基本的人權이다. 그러나 이 自由中 重要な 位置를 占하고 있는 大學의 自由는 天賦의 自然的 權利라기보다는 學問研究의 公共性에 基하여 社會制度중에서 國權에 의하여 認定되는 自由로서의 性格이 強하다.

여기에서 學問이란 眞理의 發見에 關한 理論을 말하는데 이러한 意味에서 學問은 個人的 意思의 自由에 屬하는 것이 아니라 事物, 그것 自体가 存在의 自主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學問과 言論의 區別은 그것이 個人的 自由로운 思想의 發表에 屬하느냐, 혹은 어떠한 客觀的 價値에 대한 志向이나 하는데 따라서 區別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自由는 國家에 대해서만 自由일 뿐 아니라 어떠한 社會勢力, 宗教團體, 政黨 또는 經濟的 團體등으로부터도 干涉을 받지 않는 自由를 말한다.

소위「北韓憲法」은 제59조에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先進的인 教育制度和 無料義務教育을 비롯한 國家의 人民的인 教育施策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하고있으며 제60조에서는 「公民은 科學과 文學, 藝術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創意的 考案者와 發明家들에게 配慮를 들린다. 著作權과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한다」고 規定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59조의 內容은 제1條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社會主義國家이다』라는 規定과는 撞着的인 規定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59조의 「先進的인 教育制度」를 教育의 施策으로 保障한다는 것은 곧 共產宗主國인 蘇聯의 教育制度를 指稱하고 있음이 明白한 것으로 이는 北韓의 執權者들이 每事에 唯一思想이니

主体思想이니 云云하면서도 탁상 教育制度에서는 蘇聯式을 模倣하겠다는 것을 宣言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北韓社會自体가 階級社會를 形成하고 있는데다가 「公民」의 法앞에 平等이라는 大原則이 否認되고 있는 까닭에 이런 社會에서 均等教育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當然한 것이라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上級學校에 進學할 수 있는 資格이 被教育者의 資質에 있는 것이 아니라 被教育者의 社會的·政治的 階級, 즉 出身性분에 따라 決定됨으로 進學의 길이 一部階級에 制限되기 마련이다.

또한 北韓社會는 「政府」나 黨의 政策에 대한 批判的인 思考力을 지닌 「人民」, 즉 意識階級の 「人民」을 가장 憎惡하고 있으므로 教育施策上으로도 意識階級の 社會的 進出을 抑制하기 위해서도 學問의 自由가 保障될 리 없으며 大學自治, 創作活動의 自由니 하는 것도 空虛한 用語에 不遇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北韓社會는 배우려는 自由마저도 許容치 않는 社會라는 것을 確言할 수가 있다.¹⁵⁾

IV

이상에서 소위 北韓憲法上的 基本權, 그중에서도 自由權에 대한 規定과 實際的인 保障與否를 考察해 보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所謂「北韓憲法」에서는 自由權保障에 關한 規定이 매우 不充分하다는 점과, 明文化되어 있는 一部の 自由權도 現實的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筆者의 見解로는 北韓에서의 이러한 現狀이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緣由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첫째, 共產主義는 그 自体가 唯物史觀에 입각하고 있어 人間의 個體로서의 價値나 尊嚴性을 無視하기 때문에 北韓의 執權者들이 自由權에 대해 별다른 關心을 갖고있지 않다.

둘째, 北韓의 共產政權은 正統性이 없는 傀儡政權이어서 住民들의 政權에 대한 反抗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政權의 安定을 위해서 自由權을 의식적으로 認定해 주지 않고 있다.

셋째, 北韓의 執權者들은 韓半島를 赤化시키겠다는 망상아래 住民들을 政治目的을 위한 道具로 使用하고 있다. 이의 效果를 위해서는 소위 「唯一思想」에 의해 執權者가 願하는 方向으로 「思想의 一體化」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反하는 個人的 自由를 彈壓하고 있다.

네째, 소위 「主席命令」이 超法律的인 權限을 갖고 있는 北韓社會의 二元的인 法秩序아래서는 自由權 自体의 保障을 결코 바랄 수 없다. 北韓에 있어서는 「主席命令」이 憲法과 마찬가지로

15) 金哲洙, 憲法學概論, 法文社, 1975, pp. 255-258.

效力을 가지며 政治는 法에 우선하고 있다.

다섯째. 소위 北韓憲法은 共產宗主國인 蘇聯憲法을 模倣한 것이므로 元來부터가 自由權保障이 看過된 것이며, 自由權에 대한 一部의 規定도 人間價値의 尊嚴性을 認定해서가 아니라 對外的 體面을 維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北韓의 政治的·法的 制度는 대단할 程度로 蘇聯制度의 影響을 받았다.

2次大戰直後 北韓에 駐屯했던 蘇聯軍의 도움을 얻어 傀儡政權을 세운 共產主義者들이 蘇聯의 政治體制 및 法律制度를 短期間內에 北韓地域에 移植하 려했음은 充分히 理解할만하다.

그 결과로 1948년에 이르러서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1936年 制定된 蘇聯憲法(세칭 스탈린憲法)에 規定된 것과 같은 形式的인 政治構造를 이미 갖추게 되었고 나아가 北韓地域의 民事·刑事 및 勞動關係를 規律하는 諸法律體系도 蘇聯의 그것을 模倣하게 되었다.

이같이 소위 北韓憲法의 母體는 蘇聯의 스탈린憲法인데 人間の 尊嚴性을 전혀 排除하고 있는 스탈린憲法을 모방한 北韓憲法이 自由權의 基本人權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蘇聯憲法은 스탈린死後에 改正이 이루어져 自由權保障에 대한 規定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위 北韓憲法은 現在도 自由權의 根幹이 되고 있는 身體의 自由마저도 전혀 保障이 안되고 있다.

自由權의 保障은 憲法의 宣言的 規定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刑法이나 刑事訴訟法 등 實體法과 節次法으로 充分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도 北韓의 諸般法規는 個人의 自由의 保障에 관한 條項은 커녕 오히려 毒素의 條項들이 羅列되고 있다.

北韓의 刑事訴訟法에는 公開裁判原則을 규정하고 있지만 「政治的 重要性」이라는 이유로 特定事件을 秘密 裁判에 버린다는가 刑法에 刑罰法規의 類推解釋適用의 規定을 두고 있는 것들이 그 예의 일부이다.

이상과 같은 北韓의 法秩序와 政治現實로 미루어 判斷할 때 北韓에서의 自由權은 전혀 保障이 안되고 있으며 「北韓政權」은 世界의 어느 共產國家보다도 人間の 價値와 尊嚴性을 無視하고 住民을 단지 政治的 目的을 위한 道具로 利用하는 政權이라고 確言할 수 있다.

—Summary—

A Critical Stud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n as Shipulated in the Statute

Kim Kwang taik

North Korean is prepossessed with the fantastic idea tha it will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also disapproves of a traditional unity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what is worse, undertake the national heterogeneity intentional!y. The real fact that North Korean denies the unique national culture of a people and runs about madly holding Kim Il-sung sacred ir an unpardonable sin from the view fo national uprighteousnes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established by only Kim Il-sung are pretentious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There are no articles tht have the ability of guarantee. wha is the use of the constitution ?

Kim Il sung often comments o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in order to rouse the public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eace exist where human rights don't exist at all? It is only a poitical jesture to say that North Kerean wants a peaceful unification internationally. Alliances of North Korea approve that it is a deceitful deed.

strictly speaking, we can't coepar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nd those of Aouth Korea.

North Korea, however, insists that its constitution prescribes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is paper the writer will analize w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re,, especially what freedom is, comparing it with the form prescribed in Northth Korea's constitution and it's value orientation.